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원무부서장, 약제부서장

제 목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」 및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일부 개정 통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령 제316호 (2015.5.29)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80호 (2015.5.29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계산서·영수증의 일부 문구변경과 부분 및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작성·보존방법을 간소화하며,

3.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」 및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합니다.

붙임 :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영수증서식포함) 1부.

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문 1부.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병원장

사원 김영진 팀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205 (2015.06.03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8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yjkim@kha.or.kr